코로나-19, 해외입국자에 대한 대응조치

2022. 1. 28. (금) 기준

* 아래 사항은 정보제공 차원에서 작성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.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본부, 중앙 방역대책본부 홈페이지,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해외입국자 방역관리 흐름도(공항 입국자용)

<방대본 해외출입국관리팀, '22.1.5.(수)>

◆ PCR음성확인서를 미소지(부적합 포함)한 내·외국인은 항공기 탑승제한

* 단, 도착 후 PCR음성확인서 부적합 등이 확인된 경우,
내국인은 시설격리 **5일**(비용 자부담)+자가격리 **5일**, 외국인은 입국불허 조치됨

※ PCR음성확인서 제출예외 대상은 공지사항 내 'PCR음성확인서 제출 FAQ' 참고

◆ 오미크론 변이 유행국가 시설격리 조치, 아프리카 發 입국자 진단검사 등 강화

- 오미크론 변이 발생 등 11개국* 發 단기체류 외국인 입국불허

* 남아공, 보츠와나, 짐바브웨, 나미비아, 레소토, 에스와티니, 모잠비크, 말라위, 나이지리아, 가나, 잠비아

◆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국가 -> 한시적으로 '모든 국가/지역' 지정(~'22.2.3.)

- 예방접종완료자라도 10일간 의무 격리

※ 오미크론 변이 발생 관련 대상국가 및 입국불허 등 조치사항은 변동 가능함(변동시 재안내)

□ 유증상자

구분		진단검사		검사결과		조치사항
유증상자	⇨	입국장 또는 중앙검역의료지원센터 (검역소 격리시설)	⇨	양성	⇨	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 이송
			⇨	음성	⇨	각 대상자별 무증상자 절차에 따름 (입국 후 1일내 진단검사는 완료한 것으로 봄)

□ 무증상자

○ 일반 국가 發 입국자

구 분			PCR 음성확인서	입국 후 1일차 진단검사	격리	추가 검사
국내 예방접종완료자[1] * COOV앱 또는 국내 발급 예방접종증명서 또는 접종스티커 필요	⇨	미접종자와 동일한 절차 적용 * 오미크론 변이 대응으로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국가를 모든 국가/지역으로 지정하였기 때문				
해외 예방접종완료자[2] * COOV앱 또는 국내 발급 예방접종확인서 필요	⇨					
미접종자	⇨	내국인/장기체류외국인	⇨ 제출 (적합)	⇨ 보건소	⇨ 10일간 자가격리	⇨ 격리해제전 검사
	⇨	단기체류외국인	⇨ 제출 (적합)	⇨ 임시생활시설 검사 및 10일간 시설격리 (10日 입소비용 본인부담)		⇨ 격리해제전 검사

1) 입국일 기준 예방접종완료 후 14일이 경과한 예방접종완료자로, COOV(쿠브)앱 또는 국내 발급 예방접종증명서 또는 접종스티커로 증빙이 가능한 예방접종완료자에 한함

* 국내1회+국외1회 접종완료자의 경우, 국내 발급 예방접종증명서로 1·2차 접종력이 모두 확인된다면, '국내 예방접종완료자'로 간주함(국내 시스템 등록 및 예방접종증명서 발급은 관할 보건소에 문의)

2) 입국일 기준 예방접종완료 후 14일이 경과한 예방접종완료자로, COOV(쿠브)앱 또는 국내 발급 예방접종확인서로 증빙이 가능한 예방접종완료자에 한함(국내 예방접종완료자와 동일한 조치 적용)

* 입국 당시 증빙이 불가한 경우에는 3쪽 '해외 접종이력 등록 안내' 참고

※ 예방접종증명서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(nip.kdac.go.kr) 또는 정부24(www.gov.kr)에서 출력 가능하며, 예방접종확인서는 보건소에서만 발급 가능함

※ 1), 2) 대상자의 경우, COOV앱 등으로 증빙 가능한 경우 대중교통 이용 가능함(유효기간 경과시 불가)

○ 고위험국가 發 입국자

구분		PCR 음성확인서	입국 후 1일내 진단검사	격리	추가 검사
오미크론 변이 발생 등 11개국* 發	내국인/ 장기체류 외국인	제출 (적합)	임시생활시설	시설격리 10일	5일째 검사, 격리해제전 검사
그 외 아프리카 국가 發	내국인/ 장기체류 외국인	제출 (적합)	임시생활시설	음성확인 후 자가격리	격리해제전 검사
	단기체류 외국인	제출 (적합)	임시생활시설	시설격리 10일 (10日 입소비용 본인부담)	격리해제전 검사

* 남아공, 보츠와나, 짐바브웨, 나미비아, 레소토, 에스와티니, 모잠비크, 말라위, 나이지리아, 가나, 잠비아

○ 격리면제서 소지자

☞ 세부사항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「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 지침」에 따름

※ A1(외교)·A2(공무)·A3(협정) 비자소지자 또는 입국 전 한국대사관(또는 관계부처)에서 '격리면제서'를 사전발급 받은 경우 등

구분	PCR 음성확인서	입국 후 1일내 진단검사	격리	추가검사
격리면제서 제출	제출 (적합)	임시생활시설	음성 확인 후 격리면제 * 자가진단앱 설치	6~7일째 진단검사 실시 **(보건소)**

※ SOFA협정 적용자(주한미군, 관련자)는 전원 주한미군 부대에서 PCR검사 실시(단, 아프리카 發 입국자는 '음성' 확인시까지 임시생활시설 대기해야함)

□ 해외 접종이력 등록 안내(입국 당시 미등록된 경우)

구 분	입국시	접종 이력 등록	증명서 발급 (보건소)	등록 후	재입국시
해외예방접종완료 내·외국인 (격리면제서 소지)	⇨ 격리면제 *자가진단앱 설치	⇨ 관할 보건소 방문 등록	⇨ 예방접종확인서	⇨ **격리면제서 소지시 격리면제 가능** (오미크론 변이 대응으로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국가를 모든 국가/지역으로 지정하였기 때문)	
해외예방접종완료 내국인(한국 국적자) (격리면제서 미소지)	⇨ 격리 *자가격리앱 설치	⇨ 관할 보건소 방문 등록	⇨ 예방접종확인서	⇨	
해외예방접종완료 외국인(외국적자) (격리면제서 미소지)	⇨ 격리 *자가격리앱 설치	⇨ 관할 보건소 방문 등록	⇨ 예방접종확인서	⇨	
국내1회+국외 1회 내·외국인	⇨ 격리 *자가격리앱 설치	⇨ 관할 보건소 방문 등록 *등록 즉시 격리면제	⇨ 예방접종증명서	⇨	

※ 상기 대상자의 경우, 관할 보건소에서 해외 접종이력을 등록*하여야 하며 등록 이후 확진자 밀접접촉시, 사회적 거리두기 등 국내 예방접종완료자와 동일한 방역원칙 적용 가능

* ①성명, ②생년월일, ③백신종류, ④접종일, ⑤접종기관명, ⑥접종기관 또는 해당 국가 보건당국의 직인 등을 포함한 문서화된 자료. 한글이나 영문이 아닌 경우, 한글 또는 영문 번역본과 번역 인증서류(개인번역본은 공증기관 인증 필요)를 함께 제출해야 함.

※ 국내 시스템 등록 후 재입국 시, 입국 당시 격리면제서를 소지한 경우에만 격리면제 가능함

출처 : https://www.kdca.go.kr/board/board.es?mid=a20504000000&bid=0014

〈 강남구 선별진료소(검사소) 운영 〉

구분	운영장소	운영시간		비고
		평일(공휴일)	토요일	
선별진료소	강남구 보건소	9:00~18:00	9:00~13:00 일요일 미운영	02-3423-5555 설연휴기간(1.29~2.2 5일간)은 09:00~18:00 운영
강남구 임시선별검사소	삼성역 6번 출구	9:00~17:00 (평일)	9:00~13:00 (주말·휴일)	*접수마감 : 종료 30분 전 ※ 혼잡시 조기 마감
	세곡동 방죽공원 (율현동 254-3)			
	한티근린공원 (대치역 2번출구)	9:00~17:00		
	SRT수서역	10:00~17:00		

〈 강남구 호흡기전담클리닉 〉

하나이비인후과병원	선릉다나아이비인후과	민이비인후과	강남베드로병원	디엠피부과
02-6925-1111	02-545-7799	02-501-2250	1544-7522	3445-0803

출처 : 강남구보건소 홈페이지

<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국가 안내>

■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입국 시, 자가격리 면제 적용이 제외되는 국가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.

*단, 오미크론 변이와 관련한 조치는 수시변동 가능 있으며, 변동 시 재안내 예정

【주요내용】

○ 최근 신종 변이바이러스(오미크론)의 전세계적인 발생 및 확산으로 인해 '12.12.3부터 지정중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국가를 모든 국가/지역으로 '22.1.7부터 '22.2.3까지 지정 연장함을 알려드립니다.

-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국가 發 입국자는 예방접종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격리면제 적용 제외

※해외 예방접종완료 격리면제서 소지자,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확인서를 소지한 해외 예방접종완료자도 격리면제 적용 제외

* **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국가 : 모든 국가/지역**

【적용기간】

○ '21. 1. 7.(0시) ~ '22. 2. 3.(24시) 입국자

※ 기 적용기간 ('21. 12. 3.(0시) ~ '22. 1. 6.(24시) 입국자)

【참고사항】

○ **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국가 변경 시 공지 예정**

- 단, 오미크론 변이 발생동향 등에 따라 관련 조치는 수시변동 가능 있으며, 변동 시 재안내 예정

출처 : https://www.kdca.go.kr/board/board.es?mid=a20504000000&bid=0014

2022.1.14

<해외입국자 PCR음성확인서 제출 기준>

◇ 해외입국 'PCR음성확인서' 제출기준이 '22년 1월 20일(한국시)부터 추가 강화됩니다.

* (1.13일~19일) 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 **검사 → (1.20일~) 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 검사**

1. "PCR 음성확인서" 제출 기준

구분	기준
①검사방법	▸ NAATs(Nucleic acid amplification tests) **기법에 기초한 검사일 것** * 유전자 증폭 검출(RT-PCR, LAMP, TMA, SDA, NEAR 등)에 기반한 검사에 한해 인정하며, 항원(Antigen, AG)·항체(Antibody) 검출검사(RAT, ELISA 등)는 인정하지 않음 * 검사기법과 상관없이 검체채취를 스스로 실시하는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.
② 검사 및 발급시점	▸ **출발일 기준 48시간(2일) 이내 검사한 음성확인서일 것**(1.19일까지는 72시간 이내 검사한 음성확인서라도 인정) * (예시) '22.1.22. 10:00시 출발 시 '22.1.20. 0시 이후 검사한 것으로 확인된 PCR음성확인서만 인정 ※ ('22.1.13.~) 출발일 기준 검사일이 72시간(3일) 초과한 경우 불인정 → ('22. 1. 20.~) 출발일 기준 검사일이 48시간(2일) 초과한 경우 불인정
③필수기재	▸ **성명*, 생년월일**, 검사방법, 검사일자, 검사결과, 발급일자, 검사기관명이 기재되어 있을 것** * 성명은 여권 기재내용과 동일(여권과 성명이 동일하다면 미들네임은 생략 가능) ** 여권번호 또는 ID카드번호도 가능
④검사결과	▸ **검사 결과가 '음성' 일 것** * 검사결과 기재사항이 '미결정', '양성' 등인 경우 인정하지 않음
⑤발급언어	▸ **'검사방법'** 항목은 한글 **또는 영문으로 발급되어야 할 것** * 검사방법이 한글이나 영문이 아닌 경우, 한글 또는 영문 번역본과 번역인증 서류를 함께 제출 시 인정. (단, 개인번역본의 경우 공증기관이나 대사관의 인증을 받아야 함)
⑥검사기관	▸ 필리핀, 우즈벡의 경우, 재외공관이 지정한 검사기관에서 발급한 확인서일 것 ※ 검사기관 지정 국가는 변동 가능/ 질병관리청(검역소) 홈페이지, 대사관 홈페이지 등에 게시 ※ 그 외 국가는 해당국가 내 검사기관에서 발급한 확인서의 경우 인정

※ 입국 전 관할 재외공관 홈페이지(http://overseas.mofa.go.kr)에서 해당국가별 입국절차 정보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. “PCR 음성확인서” 제출 예외 대상

○ **만 6세 미만**(입국일 기준) 영・유아(동반 일행이 전원 음성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함)

○ 인도적(장례식 참석)·공무출장 목적의 격리면제서 소지자

○ 항공기 승무원

○ 한국에서 출국하였으나 상대국에서 입국불허 등으로 해외 공항에서 입국절차를 거치지 않고 귀국한 경우(본인입증책임)

○ 싱가포르에서 입국한 내국인 선원(“대한민국 선원수첩” 소지자에 한함)

3. 미제출 또는 기준미달 음성확인서 제출 시 조치

○ (**입국 전**) PCR음성확인서 미소지 또는 기준미달 음성확인서 소지 시 항공기 탑승 불허

※ ‘PCR음성확인서 제출 예외 대상’은 음성확인서 미소지(기준미달 포함) 시에도 항공기 탑승 가능

○ (**입국 후**) 기준미달 PCR음성확인서 제출 시, 내국인은 정부가 지정한 시설에서 5일간 시설격리(입소비용 12만원/일 자부담 원칙) 후 5일간 자가격리,

- 외국인은 입국불허

※ ‘PCR음성확인서 제출 예외대상(싱가폴 선원 제외)’은 음성확인서 기준미달 시에 10일간 자가격리 원칙

해외입국자 '방역 교통망' 이용관련 FAQ

<방대본 해외출입국관리팀, 2022. 1. 20.(목)>

1. 해외입국자 '방역 교통망' 취지는?

○ 해외입국자가 공항에서 입국검사 장소(각 지자체 선별진료소 등)까지 이동 시, 일반승객과 분리한 교통수단(방역 교통망)을 이용하게 함으로써 해외입국자를 통한 지역사회 전파 최소화

2. 해외입국자 '방역 교통망' 이용 대상은?

○ '22. 1. 20. 이후부터 모든 해외입국자는 국내 입국 직후 검사결과까지'방역 교통망'이용 의무대상

- 임시생활시설(또는 입국장)에서 1일차 검사 후'음성'결과 확인된 격리면제자는 대중교통 등 이용 가능

* 격리면제자는 검사결과 확인 전에는 방역 교통망 이용

※ 한국-싱가포르·사이판 여행안전권역은 이용객 1일차 검사결과 확인(음성) 시까지 방역교통망 이용대상

※(제주도민 등 제주거주자) 김포공항 등에서 국내선 이용가능(인천공항에서 국내선 운영공항까지는 방역교통망 이용 대상)

※(항공승무원) 자차·방역택시 등 방역교통망을 통한 이동 권고

3. 해외입국자 '방역 교통망'에는 어떤 수단이 있는가?

○ 자차 이용을 원칙으로 하며, 방역버스(인천공항-지역사회간 이동), 방역열차(KTX 해외입국자 전용칸), 방역택시 등이 해당

- 인천공항에서 KTX광명역까지 이동하는 방역열차 이용객 전용셔틀버스(유료, 한국철도공사 운영)도 운영 중

4. 해외입국자 '방역 교통망' 탑승 장소?

ㅇ (인천공항) 공항 입국심사 후 환영홀에서 안내요원이 입국자가 희망하는 방역교통망 이용수단별로 분류 및 탑승안내

- 방역버스는 공항 내 지자체별 안내소에서 탑승장소 안내
- 방역열차는 공항에서 전용셔틀을 통해 KTX광명역으로 이동하여 탑승
- 자차 및 방역택시는 공항 내 지정장소에서 탑승

ㅇ (김해공항) 공항 입국심사 후 도착장에서 안내요원이 입국자의 이송수단 확인 후 자차·방역택시 탑승안내

- 자차 및 방역택시는 공항 내 지정장소(1번 GATE 앞)에서 탑승

5. 해외입국자 '방역버스' 이용 방법?

ㅇ 공항 입국 후 환영홀에서 안내요원의 안내에 따라 매표소로 이동, 표 구매 후 탑승장소로 이동

ㅇ 탑승장소에서 탑승자 명부에 이름과 주소 등을 기재 후 지정된 시간에 방역버스 탑승

ㅇ 방역버스 출발 시 버스 내 비치된 안내문 등에따라 관할 지자체 담당공무원에게 연락, 종착지에서 담당공무원 안내에 따라 선별진료소 등으로 이동

※ 버스시간표는 붙임자료 참고

6. 해외입국자 '방역열차' 이용 방법?

ㅇ 공항 입국 후 환영홀에서 안내요원의 안내에 따라 탑승장소로 이동하여 KTX광명역 行 전용셔틀 버스 탑승
ㅇ 광명역에서 해외입국자 전용대기장으로 이동하여 표를 예매(KTX 비용에 전용셔틀버스 비용 12,000원을 합산하여 지불)하고, 출발시간에 맞춰 탑승장에서 방역열차 탑승
ㅇ 방역열차로 이동 중 각 관할 지자체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유선 등 안내 예정, 각 정착역에 도착하여 지자체 담당공무원 안내에 따라 선별진료소 등으로 이동
※ 열차시간표는 한국철도공사 1544-7788로 문의

7. 해외입국자 '방역버스 또는 방역열차' 표를 온라인으로 예매할 수 있는지?

ㅇ 온라인으로는 예매가 불가하며, 인천공항 내 매표장소, 광명역 해외입국자 전용대기장에서 선착순으로 예매 실시

8. 해외입국자 '방역 교통망'으로 갈 수 없는 제주 지역의 경우 이동방법?

ㅇ 방역열차, 방역버스, 방역택시로 이동하기 어려운 제주 지역의 경우 김포(인천공항), 김해에서 제주로 국내선을 이용해 이동가능 허용
ㅇ 다만, 인천공항에서 김포까지는 방역 교통망(인천공항 환영홀에서 안내요원 안내에따라 수송차량 또는 방역택시 탑승)을 이용하여 이동
※ 인천공항-김포공항 간 수송차량은 준비 중

9. 해외입국자 '방역 교통망'을 이용하여 지자체 도착 시 검사는 언제까지 받아야 하는가?

ㅇ 지자체 담당공무원의 안내에따라 입국 후 1일내 약속된 시간 및 장소에서 검사 실시(검사 전까지 자택 등에서 대기)

10. 김해공항 등 지방공항으로 입국하는 해외입국자는 방역교통망 이용 대상인지?

ㅇ 김해공항 등에서 입국한 입국자도 방역교통망 이용대상
- 김해공항의 경우, 1층 도착장에서 안내요원(부산시 등 지자체 담당공무원)의 안내에 따라 자차(승용차), 방역택시, 방역버스(김해공항 ↔ 부산역 선별진료소) 이동 가능

* (부산역선별진료소 진단검사 대상자) 격리주소지가 부산시 소재이거나, 임시생활시설 입소하여 진단검사 실시하는 격리면제서 소지자만 가능

※ 그 외 지방공항은 국제 항공편 운항 준비중

11. 제주도 관광 목적의 여행안전권역 이용 관광객은 국내선 항공기를 이용할 수 있는지?

ㅇ 인천공항 코로나19 검사센터에서 1일차 검사를 받는 여행안전권역 입국자(싱가포르 접종자)는 1일차 검사 결과(음성) 확인 시까지 국내선 항공기 이용 불가(음성결과 확인 후 국내선 항공기 이용 가능)

※ 제주시 관할 보건소에서 1일차 검사를 받는 대상자(국내 접종자)에 한하여 국내선 항공편 이용 가능

출처 : https://www.kdca.go.kr/board/board.es?mid=a20504000000&bid=0014

2022년 상반기 검역관리지역 안내

질병관리청

보다 나은 정부 1339 질병관리청 콜센터

검역관리지역

2022년 1월 1일 기준

'검역관리지역'을 감시 기간 내 방문(체류 또는 경유)한 사람은 입국 시 반드시 「건강상태질문서」를 작성하여 검역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.
이를 위반할 경우, 검역법 제12조 및 제39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

구 분		국 가	콜레라 (14)	페스트 (2)	황열 (43)	동물인플엔자 인체감염증 (1)	중동 호흡기증후군 (11)	폴리오 (20)	에볼라 바이러스병 (2)	코로나19
아시아·중동 18개국	1	파키스탄						●		전세계
	2	중국(6개 성)*				●				
	3	아프가니스탄	●					●		
	4	사우디아라비아					●			
	5	아랍에미레이트					●			
	6	오만					●			
	7	방글라데시	●							
	8	네팔	●							
	9	타지키스탄						●		
	10	예멘	●				●	●		
	11	인도	●							
	12	카타르					●			
	13	쿠웨이트					●			
	14	바레인					●			
	15	요르단					●			
	16	이란					●			
	17	이라크					●			
	18	레바논					●			
아프리카 32개국	1	카메룬	●		●			●		
	2	콩고민주공화국	●	●	●			●	●	
	3	콩고			●					
	4	앙골라			●					
	5	베넹	●		●			●		
	6	부르키나파소			●			●		
	7	브룬디			●					
	8	중앙아프리카공화국			●					
	9	차드			●			●		
	10	코트디부아르			●			●		
	11	적도기니			●					
	12	에티오피아	●		●			●		
	13	가봉			●					
	14	잠비아			●					

* 중국(6개 성): 광둥성, 후난성, 푸젠성, 쓰촨성, 광시성, 충칭시

구 분		국 가	콜레라 (14)	페스트 (2)	황열 (43)	동물인플엔자 인체감염증 (1)	중동 호흡기증후군 (11)	폴리오 (20)	에볼라 바이러스병 (2)	코로나19
아프리카 32개국	15	가나			●					전세계
	16	기니			●			●	●	
	17	기니비사우			●					
	18	케냐	●		●					
	19	라이베리아			●			●		
	20	말리			●			●		
	21	모리타니			●					
	22	니제르	●		●			●		
	23	나이지리아	●		●			●		
	24	시에라리온			●			●		
	25	세네갈			●					
	26	남수단			●			●		
	27	수단			●					
	28	토고			●					
	29	우간다			●					
	30	소말리아	●					●		
	31	모잠비크	●							
	32	마다가스카르		●				●		
아메리카 14개국	1	아르헨티나			●					
	2	볼리비아			●					
	3	브라질			●					
	4	콜롬비아			●					
	5	에콰도르			●					
	6	프랑스령 기아나			●					
	7	가이아나			●					
	8	파나마			●					
	9	파라과이			●					
	10	페루			●					
	11	수리남			●					
	12	트리니다드 토바고			●					
	13	베네수엘라			●					
	14	우루과이			●					

나부터 지키는 우리 모두의 건강
해외감염병 NOW
www.해외감염병NOW.kr

출처 : https://www.kdca.go.kr/board/board.es?mid=a20504000000&bid=0014